

학생회관 관리 규정

제정 1997. 07. 02.

1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생의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며 면학풍토를 조성시킬 목적으로 학생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학생회관의 운영관리는 **학생행정처장**이 총괄하며, 그 업무는 **학생행복처의 학생행복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06.25)

제3조(심의) 학생회관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함에 있어서 또한 **학생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25)

제4조(시설·비품의 배치 및 관리) ①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와 비품의 배치는 **학생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06.25)

② 회관내의 모든 시설과 비품은 **학생행정처장**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9.06.25)

제5조(개관시간) 회관은 공휴일과 휴업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학생지원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학생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개관 또는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제6조(사용) ①회관 내 모든 시설은 개관시간 중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② 학생 단체실 등 회관의 일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폐관시간 이후 연장하여 회관의 일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게시물) 회관내·외의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하고 게시물은 사전에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준칙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금지사항) 회관내의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한다. 다만, **학생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6.25)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문서 기타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또는 집단행위
4. 앰프 및 각종음향기를 이용하여 고성방가 하는 행위
5. 기타 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9조(물품 망실,분실 등에 대한 배상 책임) 회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파손하거나 망실 하였을 시에는 물품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중지 및 사용제한) ①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회관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교직원 또는 재학생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외부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